

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1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8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 관련기관 유치에 따라,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일부 공간을 입주기관 공간마련 및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상기관 : 김포산업지원센터, 한국산업기술시험원
나. 대상시설 :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(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)
다. 사용기간 : 2024. 10. 1. ~ 2029. 9. 30.(5년)
라. 사용면적 : 1,632.65㎡ (김포산업지원센터 162.32㎡ /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,470.33㎡)
마. 이용내용

① 김포산업지원센터

- 김포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및 센터장실 공간 마련
-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
- 지역산업·기업지원 정책연구 및 김포시 특화사업 육성·지원

② 한국산업기술시험원

-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디지털산업본부 산업지능화기술센터 설치
- 제품시험분석 및 인증(KC인증, IDX시험, 소프트웨어·AI·드론 국제 표준화 등)
- AI 시스템 신뢰성 분야 연구 및 적합성 평가,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등
- RFID, 스마트 공장, UAM 등 국책과제 연구개발 및 사업

바. 이용현황

구분	이용시설	면적(㎡)	비고
합계		1,632.65	
김포산업지원센터	5층(사무실, 센터장실(2실))	162.32	
한국산업기술시험원	계	1,470.33	
	1층(민원접견실)	42.31	
	3층(사무실, 시험인증실 등)	659.52	
	4층(디지털 국책사업 연구공간)	768.5	

3. 관계법령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
- 나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및 제20호
- 다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및 제4호
- 라.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
- 마.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9호
- 바.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

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센터 내 김포산업지원센터 공간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
(2024년도 본예산 ‘제조융합혁신센터 내부 인테리어’ 시설비 사용)
※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등 관련비용 기관 자부담

5. 그 밖의 참고사항 : 붙임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기업지원과장 최재욱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하세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이찬호(☎2283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(이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- 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- 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

제2조(특정연구기관)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“특정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

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 법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
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

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사용허가 등)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